

해 양 대 학 원 학 칙

제정 2010. 10. 8

개정 2012. 5. 2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은 해양 관련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정)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칭함)과 박사학위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칭함),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(이하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학위수여)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는 해양학과를 둔다.

② 과정별 입학정원은 35명(석사25명, 박사10명)으로 한다.

제 2 장 입학 · 재입학

제5조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제6조(지원자격)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7조(지원절차) ①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치루어야 한다.

1.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

- 입학지원서,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,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

2.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

- 입학지원서,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,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, 석사학위논문 별쇄본

②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입학전형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전형방법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총장은 필

요에 따라 일부 전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.

1. 학력 및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
2. 영어시험(비영어권 국가의 경우)
3. 전공기술시험(외국인의 경우 출신 대학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음)

②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전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입학절차)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입학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
1. 학칙 제15조 제3항의 재학연한 초과자
2. 학칙 제15조 제4항의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

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 한다.

제 3 장 등록 및 학적변동

제11조(등록)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.

제12조(휴학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/4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개학기, 박사과정에서는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무 복무를 위한 군입대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복학)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.

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/4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.

제14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
2.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3.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4.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

제16조(재심청구) 제15조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제적결정에 불복 하는 자는 제적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4 장 수업 및 학점

제17조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(매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

제18조(교과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,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 단, 학점의 조기취득, 과정간의 학점이월, 포항공과대학교 (이하 "본대학" 이라한다) 및 타 대학원의 취득학점인정,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, 석·박사과정은 각각 6월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, 박사과정 6년, 통합과정 7년으로 한다.

③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.

④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1년씩 총장이 연장할 수 있다.

제20조(상주재학) 최소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2개학기, 박사과정의 학생은 4개 학기를 상주 재학하여야 한다.

제21조(과정의 수료) ① 이 학칙 제22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이 B⁺(3.0)이상이며 박사과정에서 4개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전 ①항에 의해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생에게는 학생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.

제22조(수료학점) ①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28학점, 박사과정은 32학점, 그리고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.

② 각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저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은 18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, 그리고 통합과정은 24학점으로 한다.

제23조(교과학점과 연구학점) ① 교과학점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 단,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과목 6학점에 한한다.

② 연구학점은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.

제24조(학기당 취득학점)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이상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제25조(학점 부여 기준)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논문연구, 세미나, 실험실습 등의 연구학점은 이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.

제26조(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)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각 과정에서의 인정 범위는 각 과정의 졸업 및 수료를 충족시키고 초과한 학점에 한하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27조(일반대학원 학점취득 인정) 본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 일반대학원(이하“일반대학원”이라 한다)에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성적평가)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, 과제물,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A+	A°	A-	B+	B°	B-	C+	C°	C-	D+	D°	D-	F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	2.1	1.7	1.3	1.0	0.7	0

②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(합격) 또는 U(불합격)로 부여한다.

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(미완)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9조(학점인정 및 평점계산) ① D-이상 또는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S학점은 평점 계산에는 포함치 아니한다.

제30조(수강신청의 변경)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동안에는 지도교수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31조(수강포기) 학생은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는 과목담당 교수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, 그 성적은 W로 처리한다. 다만, 3주 이내의 수강포기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32조(추가시험) ①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과목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(학점인정일수) 타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/4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34조(재수강)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35조(타 대학 대학원 학점인정)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국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6조(특별강좌) 본 대학원 석·박사과정에는 방학기간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특별 강좌를 총장이 개설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 5 장 비 학 위 과 정

제37조(공개강좌) 본 대학원에서는 교양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38조(연구생) ① 본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정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수강 및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신분으로 수강 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은 수강료를 필요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 6 장 장 학 금

제39조(장학금 및 학생조교 운영)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학생조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

제40조(장학금 이중 수혜의 금지) 장학금의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다만, 특수한 성격의 장학금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7 장 징 계

제41조(학사경고)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B^o(3.0)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.

② 재학기간 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.

제42조(징계)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.

② 징계는 근신, 정학(유기, 무기)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③ 모든 징계는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제된다. 징계기간 만료전이나, 무기정학자의 징계해제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청원한다.

제 8 장 대 학 원 위 원 회

제43조(구성)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. 다만, 필요 시 본 대학 교원 중에서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4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45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원생의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원 학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본 대학원의 학과, 전공의 설치,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4.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5. 본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6. 대학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
7.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6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)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7조(준용조항)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 9 장 학 칙 개 정

제48조(학칙개정절차)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년 10월 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5월 22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